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문화교육사업, 안전문화운동 등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따라서, 이 조례는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에 대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와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6. 2.~'23. 6.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